##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5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남희·이연희·김영호

박희승 · 송재봉 · 임미애

남인순 • 박상혁 • 최민희

정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 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 상태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

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반포등을</u> 할 목적으로	등) ① <u>사람의</u>
<u>사람의</u> 얼굴·신체 또는 음성	
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	
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	
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	
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④</u> 상습으로 제1항부터 <u>제3항</u>	<u>⑤</u> <u>제4항</u>
<u>까지의</u> 죄를 범한 때에는 그	<u>까지의</u>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